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아량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2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상훈, 정지권, 정진철,
이병도, 추승우, 이정인,
이은주, 송정빈, 채유미,
김태호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급성 심장정지 환자 증가에 따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, 응급의료장비(자동심장충격기, 이하 “AED”라 한다) 활용이 늘어나면서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.
- 현행 『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』은 공공기관,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AED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의무설치기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ED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『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』는 AED의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장비 안내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AED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AED의 적시 사용과 안전한 서울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『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』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응급의료장비를”을 “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시설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<u>응급의료장비</u>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</u> 등의 시설을 ----- 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